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
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규모유통업자의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
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100분의 50에서
100분의 100으로 상향(안 별표1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나목 중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1] 2. 과징금 산정기준	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위반행위의 기간·횟수, 자진시	나. -----
정·조사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	-----
중의 경우 산정기준의 <u>100분의 50의</u>	----- <u>100분의 100의</u>
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	-----
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할 수 있	-----
고, 감경의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	-----
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	-----
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할	-----
수 있다.	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964